



# 세금 혜택의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

신규 주택을 구입할 때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을 누가 했습니까? 새 세법은 여러분이 원하는 혜택, 즉 주택 구입자에게 최고 \$8,00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해 줍니다.

지난 3년 동안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경우 (기혼자의 경우 배우자도 그 기간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음) 귀하는 \$8,00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거주하는 집을 바꿀 경우 \$6,50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소득 또는 기타 제한이 적용될 수 있지만 여러분 중 대부분은 이제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2010년 4월 30일까지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, 2010년 6월 30일까지 구입을 종결하여 소득세 신고 시에 현금 환급을 받으십시오. “즐거운 나의 집”이 이처럼 매력적으로 들린 적이 없을 것입니다!

웹사이트: [irs.gov/recovery](http://irs.gov/recovery)

